

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2. 8. 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인구급증 및 지역개발과 더불어 날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의 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[기구개편]

○ 실 ----- 중 1

- 신 설 : 1실(기획관리실)

○ 담당관·과 ----- 중 3

- 신 설 : 2담당관 1과(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시세과)
- 명칭변경 : 기획실 ⇒ 기획담당관, 세무과 ⇒ 도세과

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중 “국장 및 실·과장”을“실장 · 국장 및 담당관·과장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“국장”을“실장·국장”으로 “실·과장”을“담당관·과장”으로 “과”를 “담당관·과”로 한다.

제3조중 “기획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건설국”을 “기획관리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건설국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획관리실)① 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.

②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시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·통제
2.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평가
3. 법제 및 소송업무
4. 예산편성 및 운용
5. 지방채, 기채, 일시차입, 채무부담 행위 관리
6. 의회관련 업무
7.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
8. 파주시시설관리공단관련 업무
9. 지방공단·공사 등 투자법인의 지도·감독
10. 시정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운영
11. 시정의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

12.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

13. 시 행정의 감사 및 상급기관의 수감

14. 진정서 처리 및 비위조사 업무

15. 민원조사, 다수민원관리 및 민원처리실태 검열

16.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

17. 시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

18. 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

19. 지리정보 시스템(G.I.S)전산처리 지원 업무

20.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

제5조중 “총무과, 시민과, 세무과, 회계과, 문화체육과”를 “총무과, 시민과, 시세과, 도세과, 회계과, 문화체육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“기획실”을“기획관리실”으로 한다.

②파주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“국장·실장·과장”을“실장·국장·담당관·과장”으로 한다.

③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2항 제2호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④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2항중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⑤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중 “총무과장”을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하고 “교류협력 팀장”을“경영지원담당”으로 한다.

⑥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 제3호중 “실·과·소”를“담당관·과·소”로 한다.

제14조 제3항중 “실과장”을“담당관·과장”으로 한다.

⑦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중 “각 국장 및 기획실장”을“기획관리실장 및 각 국장”으로 한다.

⑧파주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3항중 “실·과·소장”을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으로 하고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
담당관”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⑨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 제2호중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하고 제3호중 “예산업무”
를“업무”로 한다.

⑩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중 “국·소장 및 실장”을“실·국·소장”으로 하고 동조 제3항·

제4조 제1항·제5조중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⑪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 제1호중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⑫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3항중 “실장·과장”을“담당관·과장”으로 한다.

⑬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구성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3항 제1호중 “기획실장”을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하고 “주택과장”을“허가과장”
으로 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 무 과 ☎940-4123
입 안 자	총 무 과 장	홍 덕 기
	시 정 담 당	기 우 균
	담 당 자	이 종 춘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국장 및 실 · 과장)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, 본청 · 직속기관 · 사업소 ·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 · 과장등 보조 ·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국장 및 실 · 과장)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, 본청 · 직속기관 · 사업소 ·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 · 과장등 보조 ·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실장 및 국장 · 담당관 · 과장)①	실장 · 국장	-----
제3조(실 · 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건설국 을 둔다.	제3조(실 · 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건설국 을 둔다.	담당관 · 과장	-----	담당관 · 과
〈신 설〉	제3조(실 · 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건설국 을 둔다.	제3조(실 · 국의 설치)	-----	-----
	제4조(기획관리실)①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.	제4조(기획관리실)①	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,	-----
	②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	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.	-----
	1. 시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· 통제		②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-----
	2.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평가		1. 시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· 통제	-----
	3. 법제 및 소송업무		2.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평가	-----
	4. 예산편성 및 운용		3. 법제 및 소송업무	-----
	5. 지방채, 기채, 일시차입, 채무부담 행위관리		4. 예산편성 및 운용	-----
	6. 의회관련 업무		5. 지방채, 기채, 일시차입, 채무부담 행위관리	-----
	7.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		6. 의회관련 업무	-----
	8. 파주시시설관리공단관련 업무		7.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	-----
	9. 지방공단 · 공사 등 투자법인의 지도 · 감독		8. 파주시시설관리공단관련 업무	-----
	10. 시정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운영		9. 지방공단 · 공사 등 투자법인의 지도 · 감독	-----
	11. 시정의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		10. 시정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운영	-----
	12.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		11. 시정의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	-----
	13. 시 행정의 감사 및 상급기관의 수감		12.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	-----
	14. 진정서 처리 및 비위조사 업무		13. 시 행정의 감사 및 상급기관의 수감	-----
	15. 민원조사, 다수민원관리 및 민원처리실태 검열		14. 진정서 처리 및 비위조사 업무	-----
	16.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		15. 민원조사, 다수민원관리 및 민원처리실태 검열	-----
	17. 시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		16.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	-----
	18. 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	17. 시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	-----
	19. 지리정보 시스템(G.I.S)전산처리 지원 업무		18. 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	-----
	20.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		19. 지리정보 시스템(G.I.S)전산처리 지원 업무	-----
제5조(총무국)①총무국에 총무과, 시민과, 세무과, 회계과, 문화체육과를 둔다.	제5조(총무국)①총무국에 총무과, 시민과, 세무과, 회계과, 문화체육과를 둔다.	제5조(총무국)①	-----	시세과, 도세과